

작성 방법

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 표시를 합니다.
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가. 자기조정(자가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13
 -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마.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 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과세기간: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상의 9쪽 ⑪과세기간개시일과 ⑫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㉓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㉔소득세 및 ㉕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